

부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4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4208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2168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론 종결 2021. 10. 13.

판결 선고 2021. 11. 1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2168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5. 2. 접수 제19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9행 다음에 "이에 C은 부산고등법원 2020나509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10.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2행 "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9행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위 ④항에서 보듯이 H이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H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이전받음과 동시에 H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H이 C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22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C은 그마저도 자신 명의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인 V 명의의 계좌로 위 돈과 대여금을 송금받았으며, 검찰조사 당시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해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8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 ⑥항을 추가한다.

『⑥ H은 C에 대한 투자자 중 1인이고,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8. 3.말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도 C에게 채무관계가 있는데 C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C이 2018. 4.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투자자들과 채무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하였다.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H은 C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신민석

판사양우창

별지